

1. 개정이유

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만족해야하는 일부 기준을 제외 또는 완화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,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, 정지표시 장치 및 후방보행자안전장치 기준을 제외(안 제114조제19항)
- 나. 승강구,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, 간접시계장치 및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기준을 일부 완화(안 제114조제20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경찰청,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4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⑰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서 대형 승합자동차(이하 이 조에서 “체험학습용자동차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제19조제8항·제10항,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⑱ 체험학습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.

1.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:
어린이 승하차를 보조하는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2. 제4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 기준: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지하거나 출발하려는 경우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을 갖추어 작동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갈음할 수 있다.

3.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간접시계 장치 기준: 간접시계장치(이를 대체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 장치를 포함한다)는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4. 제53조의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: 어린이의 하차 시 하차 시간을 고려하여 경음기의 시간 설정을 할 보호자가 동승하고,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를 차실 가장 뒷열의 좌석 부근에 설치(탈부착 방식의 설치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 도로에 정지하거나 출발하려는 경우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을 갖추어 작동하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같음할 수 있다.

3.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 기준: 간접시계장치(이를 대체하는 광각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포함한다)는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4. 제53조의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: 어린이의 하차 시 하차 시간을 고려하여 경음기의 시간 설정을 할 보호자가 동승하고,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를 차실 가장 뒷열의 좌석 부근에 설치(탈부착 방식의 설치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같음할 수 있다.